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규정에 따른다. 2. “기술이전 기여자”란 산학협력단에 <u>1개월 이상</u> 근무한 교직원으로서 기술이전 및 사업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자를 말한다. 제4조(발명신고) ③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발명자 등은 비전담 특허사무소 활용 사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산학협력단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u>다만, 비전담 특허사무소의 활용 여부 결정은 지식재산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u> 제5조(발명인터뷰제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발명인터뷰를 시행하기 위하여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u>5인 이상</u>의 발명인터뷰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2. ----- ----- <u>2개월 이상</u> ----- ----- ----- -----. 제4조(발명신고) ③ ----- ----- ----- ----- -----. <u><삭제></u> 제5조(발명인터뷰제 운영) ② ----- ----- ----- <u>3인 이상</u> ----- ----- -----.	산학협력단 직원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근무기간 과의 통일 불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평가위원 인원 축소를 통한 발명인터뷰 간소화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6조(발명 승계 및 지식재산권 비용 부담) ② 산학협력단은 권리를 승계하기로 결정한 발명에 대하여 발명인터뷰 평가 등급에 따라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권리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이하 “지식재산 비용”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제6조(발명 승계 및 지식재산권 비용 부담) ② (현행과 같음)	해외특허 진입 활성화를 위한 기준 변경																																																	
<table border="1"><thead><tr><th>구분</th><th>S 등급</th><th>A 등급</th><th>B 등급</th><th>C등급 이하</th></tr></thead><tbody><tr><td>국·내 출원, 등록 및 유지·관리비용</td><td colspan="3">최대 100% 지원</td><td>지원 없음</td></tr><tr><td>해·외 출원, 등록 및 유지·관리 비용</td><td>최대 100% 지원 (최대 2개국 지원)</td><td>최대 100% 지원 (최대 1개국 지원)</td><td colspan="2">지원없음</td></tr><tr><td>제3자와 공동출원</td><td colspan="4">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지원(단, 평가등급에 따른 지원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td></tr><tr><td colspan="5">※ PCT(특허협력조약) 출원은 해외 1개국으로 산정 ※ EPC(유럽특허조약) 지식재산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함 ※ <신설></td></tr></tbody></table>	구분		S 등급	A 등급	B 등급	C등급 이하	국·내 출원, 등록 및 유지·관리비용	최대 100% 지원			지원 없음	해·외 출원, 등록 및 유지·관리 비용	최대 100% 지원 (최대 2개국 지원)	최대 100% 지원 (최대 1개국 지원)	지원없음		제3자와 공동출원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지원(단, 평가등급에 따른 지원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PCT(특허협력조약) 출원은 해외 1개국으로 산정 ※ EPC(유럽특허조약) 지식재산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함 ※ <신설>					<table border="1"><thead><tr><th>구분</th><th>S 등급</th><th>A 등급</th><th>B 등급</th><th>C등급 이하</th></tr></thead><tbody><tr><td>국·내 출원, 등록 및 유지·관리비용</td><td colspan="3">최대 100% 지원</td><td>지원 없음</td></tr><tr><td>해·외 출원, 등록 및 유지·관리 비용</td><td>최대 100% 지원 (최대 2개국 지원)</td><td>최대 100% 지원 (최대 1개국 지원)</td><td colspan="2">지원없음</td></tr><tr><td>제3자와 공동출원</td><td colspan="4">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지원(단, 평가등급에 따른 지원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td></tr><tr><td colspan="5">※ PCT(특허협력조약) 출원은 해외 1개국으로 산정 ※ EPC(유럽특허조약) 지식재산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함 ※ 공동 권리 특허의 해외 진입시, 해외특허 지분을 총합이 200% 이내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통해 지원</td></tr></tbody></table>	구분	S 등급	A 등급	B 등급	C등급 이하	국·내 출원, 등록 및 유지·관리비용	최대 100% 지원			지원 없음	해·외 출원, 등록 및 유지·관리 비용	최대 100% 지원 (최대 2개국 지원)	최대 100% 지원 (최대 1개국 지원)	지원없음		제3자와 공동출원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지원(단, 평가등급에 따른 지원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PCT(특허협력조약) 출원은 해외 1개국으로 산정 ※ EPC(유럽특허조약) 지식재산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함 ※ 공동 권리 특허의 해외 진입시, 해외특허 지분을 총합이 200% 이내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통해 지원			
구분	S 등급	A 등급	B 등급	C등급 이하																																															
국·내 출원, 등록 및 유지·관리비용	최대 100% 지원			지원 없음																																															
해·외 출원, 등록 및 유지·관리 비용	최대 100% 지원 (최대 2개국 지원)	최대 100% 지원 (최대 1개국 지원)	지원없음																																																
제3자와 공동출원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지원(단, 평가등급에 따른 지원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PCT(특허협력조약) 출원은 해외 1개국으로 산정 ※ EPC(유럽특허조약) 지식재산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함 ※ <신설>																																																			
구분	S 등급	A 등급	B 등급	C등급 이하																																															
국·내 출원, 등록 및 유지·관리비용	최대 100% 지원			지원 없음																																															
해·외 출원, 등록 및 유지·관리 비용	최대 100% 지원 (최대 2개국 지원)	최대 100% 지원 (최대 1개국 지원)	지원없음																																																
제3자와 공동출원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지원(단, 평가등급에 따른 지원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PCT(특허협력조약) 출원은 해외 1개국으로 산정 ※ EPC(유럽특허조약) 지식재산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함 ※ 공동 권리 특허의 해외 진입시, 해외특허 지분을 총합이 200% 이내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통해 지원																																																			
제9조 (기술료 산정) ④ 교원 창업 기업의 기술료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최초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1. <신 설> 2.~3. (생략)	제9조 (기술료 산정) ④ (현행과 같음)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적용한 고정 기술료와 해당 기업의 지분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기술료 2.~3. (현행과 같음)	지침 신설을 통한 기술료 산정지침 완화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3. <u>기술재투자비</u>는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목적으로 한 연구개발비, 기술가치제고비, 기술이전 사후관리, 기술사업화 경비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4. (생략) ③ (생략) 제16조(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심의) ① <u>심의위원회</u>는 매년 심의 대상 기간(1월 1일~12월 31일)의 기술이전 실적에 근거하여 연 1회 이상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에 대해 심의한다. ②~③ (생략) ④ 기술이전 기여자 범위는 심의 대상 기간 중 산학협력단 근무기간이 <u>1개월 이상</u>인 자로 한정한다. 다만, 근무기간 산정 시 휴직기간(출산휴가 포함)은 제외한다.	3. <u>기관 기술재투자비</u>는 ----- ----- ----- -----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심의) ① <u>산학협력단장은 기술이전 기여자보상금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u> ----- ----- ----- -----. (이하 “<u>심사위원회</u>” 라고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u>2개월 이상</u> ----- ----- -----.	지식재산 심의 위원회와 구분을 통한 명확성 강화 산학협력단 직원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근무기간 과의 통일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17조(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 지급) ① 산학협력단장은 <u>심의회</u> 심의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기술이전 기여자에게 지급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u>심의회</u> 심의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별지 제1호 (발명신고서)	제17조(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 지급) ① ----- <u>심사위원회</u> ----- -----. ②(현행과 같음) ③ ----- ----- ----- <u>심사위원회</u> ----- -----. 별지 제1호 (발명신고서) 전담 특허사무소 최신화	용어 변경에 따른 명확성 강화 전담 사무소 재선정에 따른 현행화 불필요 첨부서류 삭제
별지 제8호 (기술이전 신청서)	별지 제8호 (기술이전 신청서) 첨부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삭제	상위법령 개정 기술이전 기여자 기재부분 삭제
별지 제9호 (기술이전 동의서)	별지 제9호 (기술이전 동의서) 기술이전 기여자 기재 삭제	